

알기쉬운 세무상식

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세제보완①

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바뀐 세법을 모아봤다.

실명제 실시후 보완된 부분을 보면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자료와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된 것을 알 수 있다.
개정세법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둬으로써 부당하게 받게 될지도 모르는 세금부담을 줄이도록 하자.

소득세의 세율인하 및 공제액 조정

금융실명제 실시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액을 인상·조정했다.

구 분	종 전	개 정
소득세율		
400만원 이하	5%	5%
400~800만원	10%	9%
800~1,600만원	20%	18%
1,600~3,200만원	30%	27%
3,200~6,400만원	40%	36%
6,400만원 초과	50%	45%
소득공제		
기초공제	60만원	72만원
근로소득 공제	250~600만원	270~620만원
장애자 공제	48만원	54만원
자녀교육비 공제	2인 이내의 직계비속	직계비속전원
생산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		
비과세 한도	180만원	240만원

법인세율 조정

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법인세율을 2% 포인트 인하하고, 공공법인의 낮은 세율을 인상해 법인 세율체계를 단순화했다.

구 분	종 전	개 정
일반법인 세율		
과세표준 1억원 이하	20%	18%
과세표준 1억원 초과	34%	32%
공공법인 세율		
과세표준 3억원 이하	17%	18%
과세표준 3억원 초과	25%	25%

상속·증여세의 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 조정

상속·증여세의 누진최고 세율을 5% 포인트 인하하고, 각종 공제액

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했다.

	구 분	종 전	개 정
상속세	최고세율	55%	50%
	기초공제	6,000만원	1억원
	배우자 공제	1억+(600만원×결혼년수)	1억+(1,200만원×결혼년수)
	보험금 공제	700만원	1,500만원
증여세	최고세율	60%	55%
	배우자 공제	1,500만원+(100만원×결혼년수)	3,000만원+(300만원×결혼년수)
	직계존비속 공제	1,500만원	3,000만원(미성년자의 경우는 1,500만원)
	보험금 공제	10만원	500만원

부가가치세의 부담 경감

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과표의 양성화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등 각종 공제제도를 개선했다.

① 한계세액공제제도 신설

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7,500만원(대리, 중개 등은 1,875만원)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인 경우,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납부할 세액과 과세특례자로 있을 경우에 부담하는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일정률을 경감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.

한계세액공제액	
일반업종=(납부세액-(매출액×1.1×0.02))×	$\frac{7,500\text{만원}-\text{매출액}}{5,700\text{만원}}$
대리·중개등=(납부세액-(매출액×1.1×0.035))×	$\frac{1,875\text{만원}-\text{매출액}}{1,425\text{만원}}$

※ **알립니다** : 본 편집부에서는 독자여러분이 부딪치는 세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무상담을 받습니다. 제과점을 경영하면서 부딪치는 문제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의문이 생기는 세무문제를 우편으로 질문해 주시면 지면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